

한국 폴 주식회사
기본 판매 계약 조건
장비, 시스템, 주문 제조품 판매 적용

1. 수락: 완전 합의 조항:

- 1.1** 본 판매 계약 조건은 (“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한 구매 주문 (“제품”)에 명시된 상품의 판매에 한하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구매 주문을 함으로써 조건에 따른 제품의 구매를 제의한다. 구매 주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구매 제품 목록, (b) 주문 제품의 각 수량, (c) 요청 인도 일자, (d) 구매 제품의 각 단가, (e) 청구서 발송지, (f) 인도 장소 (“기본 구매 주문 조건”).
- 1.2** 별첨 견적서, 제안서, 판매 확인서, 청구서, 주문 확인서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이와 비슷한 문서 (“판매 확인서”) 및 기본 구매 주문 조건과 본 판매 계약 조건 (통칭하여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 합의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거의 혹은 현재의 서면 및 구두 형태의 합의, 계약, 협상, 진술, 보증 및 통신을 모두 포함한다. 본 조건은 매수인의 일반 구매 조건에 우선하며 매수인이 구매 주문 혹은 일반 구매 조건의 제시 여부 및 제시한 시기와 관계가 없다. 매수인의 주문을 이행하는 것은 매수인의 계약 조건 수락을 포함하지 않으며 본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1.3** 계약서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에 관해 양 측이 서명한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면 본 계약서와 일치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한다.

2.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 2.1** 매수인은 설계 사양 및 적용 가능 여부, 제품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매도인에게 정확하게 지시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서면으로 제시한 도면, 문서 및 기타 정보에 나타난, 또는 그러한 문서들과 계약의 범위 및 본 주문을 구성하는 기타 문서와의 사이에서 나타난 불일치, 오류 및 누락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달된 매수인의 문서에 명시된 설계 사양 및 요구사항이 매도인에게 전달된 대로 제품에 대한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데 동의하며, 매도인의 상품 공급은 해당 설계 사양 및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을 인정한다.
- 2.2** 제품의 설치 및 운용 장소 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 실시 장소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수인의 단독 책임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장소가 제품의 설치와 운용에 적합한지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또 그러한 요청이 적절한 경우에는, 제품의 인도를 개시하기 전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해당 장소를 점검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장소에 제품의 설치와 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장소를 제품의 설치와 운용에 적합하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2.3** 매수인은 일반 업무 시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목적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전 협의가 있으면, 매도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의 해당 장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 2.4** 매도인은 설치, 감독,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에 제품의 설치나 작동을 위해 매수인의 기존 장비를 옮기거나 전원을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 통지해야 하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장비의 이동 및 전원의 해제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을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2.5** 표준 판매 조건은 매도인의 표준 전자 포맷의 두 세트의 운영 지침을 포함한다. 추가 포맷 혹은 대안 포맷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 포맷 요청서를 수령하면 가격 견적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인도:

- 3.1** 제품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인도되며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구매 주문 수령 후 완제품이 인도 가능한 상황일 때 타당한 시간 안에 인도 되어야 한다. 인도 및/혹은 배송 일정은 매도인의 판매 확인서 혹은 매도인의 견적서 및 모든 명세서를 수령한 시간에 따라 현재 상황에 기반하여 가장 최적으로 추정 가능하며 표준 제품의 판매가 아닌 경우,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매도인이 수령함에 따라 인도 일이 정해 진다. 매도인은 인도 중에 발생한 지연, 멸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미사용을 비롯 직접 피해, 간접 피해 혹은 결과적 피해를 포함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2** 매도인은 고유 권한에 따라 법적 책임 혹은 위약금 없이 견적서상에 명시된 배송일 이전이라도 물품의 인도가 가능하게 되면 부분 인도를 할 수 있다. 물품이 분할 인도되는 경우, 물품의 부분이 동일한 구매 주문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동 계약의 적용을 받으며 하나의 계약으로써 분리될 수 없는 주문으로 처리된다.
- 3.3** 매도인은 매도인의 공장 혹은 지정 선적 지점 (별칭, "매도인의 선적 지점")에서 물품의 포장과 배송에 관한 매도인의 규격 방법을 통해 물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선적 지점으로 배송되었다는 매도인의 서면 통지를 수령 한지 5 일 내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3.4** 어떠한 이유로, 매수인이 물품이 매도인의 선적 지점으로 배송되었다는 매도인의 통지상에 명시된 일자에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혹은 매수인이 적절한 지시 사항, 문서, 허가 혹은 인가를 제공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지정일에 매도인의 선적 지점에 물품을 배송하지 못한 경우, (a) 물품에 대한 권리와 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인도된다. (b) 물품은 배송된 것으로 간주 된다. (c)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전까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매수인은 모든 관련 경비와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어떠한 제한 없이 화물운송, 재입고, 보관 및 보험을 포함)

4. 인도 조건:

- 4.1**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면으로 상호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가 아닌 한, 매도인의 선적지로부터의 인도는 FCA (운송인 인도) 인코텀즈 2010 을 따릅니다.
- 4.2**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품이 매수인의 현장/시설로 인도되도록 할 것입니다. 매도인은 모든 화물 운송료, 세금, 관세, 입장료, 중개료, 특별비용, 잡비, 기타 모든 부대 비용 및 특별 포장비 등을 매도인에게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5. 권리와 멸실의 위험:

다음의 경우, 권리와 멸실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a) 물품이 운반 지점에 인도 된 경우, 혹은 (b) 조항 3.4 조에 해당하는 인도로 간주되는 경우. 물품의 판매 가격 지급에 대한 담보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유치권과 매수인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에 대한 선취 특권을 인정하며, 물품의 위치에 관계없고, 권리는 현재 있을 수도, 향후에 발생할 수도 시간에 따라 때때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앞서 언급한 권리의 모든 시작, 대체 혹은 변형 및 모든 수익금을 포함한다. (보험 급부를 포함)

6. 부적합 품의 검사 및 거부:

- 6.1**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 기간") 매수인이 검사 기간 내에 부적합 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시 물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적합 품의 통지 시 서면 증거 혹은 기타 문서를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물품의 모든 부적 합성을 밝혀야 하고 수송물의 일부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의 조치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제공하여 대응한다.
- 6.2** 매수인이 검사 기간 안에 매도인에게 부적합 품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유 권한 내에서 (a) 부적합 품을 적합품으로 대체하거나 (b) 부적합 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와 관하여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적정한 수준의 배송 및 처리 비용과 함께 입금하거나 환불한다. 매수인은 비용과 멸실의 위험을 안고 부적합 품을 매도인의 선적지에 인도한다. 매도인이 부적합 품을 교환하고자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부적합 품을 수령한 후에 매수인의 비용과 멸실의 위험을 안고 매도인의 배송지에 교환할 물품을 인도한다.
- 6.3** 조항 6.2 조에 명시된 방법은 부적합 품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독자적인 방법임을 매수인은 인정하고 동의한다. 조항 6.2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물품 판매는 일방적이며 매수인은 본 계약 하에 구매한 물품을 매도인에게 환불할 권리가 없다.

7. 서비스:

판매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은 판매 확인서 (통칭 "서비스")에 명확히 명시된 것과 같이 설치, 감독, 서비스를 정상 업무 시간에 제공한다. 업무 시간 외에 요청되거나 요구되는 서비스 혹은 명시되거나 합의된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는 매도인의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현재 요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판매 확인서에 명시 된 요금에 추가 된다.

8. 판매가: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매도인의 견적 가격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또한 언제든지 연료 혹은 에너지 추가 요금 (물품 가격에 추가하여) (“**구입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구입 가격은 본 계약, 판매 확인서 혹은 적용 가능한 계약 문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일정에 기반한다. 앞서 명시된 것과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인도 일정이 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대표 (불가항력 혹은 매도인에 의한 자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또한 작업 및 프로젝트의 중단, 인도 일자의 연기 혹은 개시 통지 및 비슷한 문서의 발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러 한 지연에 대해 일 개월 혹은 그 이하에 **1%** 씩 물품 가격을 인상하며, 본 계약은 증가 된 구매 가격이 원래 가격인 것처럼 해석하고 매수인은 인상된 구매 가격을 기반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9. 세금: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세 (GS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 등을 포함한, 판매, 사용, 소비에 관련된 연방세, 주세 및 지방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모든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의 송장 제출 시에 매수인에 의해 지급됩니다. 매수인은 해당 세무 기관에 증가된 액수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관련된 모든 판매세나 그와 상당한 세금을 면제 받고도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판매세 면세 번호를 매도인에게 적시에 제공하지 않아 매도인이 그러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매도인에 의해 지급된 그러한 금액은 매도인의 송장 제출 시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되어야 합니다.

10. 대금 지급:

10.1 본 계약의 대금이 분할로 지급되면,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각각, “대금 지급 일정”):

- (a) 매도인이 프로젝트 착수 이전, 혹은 (ii) 매도인에게 발주서 도착 이전, 혹은 (iii) 판매 확인서 이전에는 구매가격의 5%
- (b) 매도인의 1 차 도면 제출시에 구매가격의 20%
- (c) 매도인의 도면 제출 완료 시에 구매가격의 20%
- (d) 매도인의 제품 제작 시작 통보 시에 구매 가격의 20%
- (e) 매도인의 제품 인도 날짜, 혹은 (ii) 제품의 인도 준비가 되었다(“제작 완료”)는 매도인의 통지 날짜에 구매가격의 25%
- (f) 구매 제품 설치 완료 후 첫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 혹은 (ii) 구매 제품이 인도된 후 30 일 이 경과한 후 구매가격의 10%

10.2 특정 마일 스톤 달성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혹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그런 대금 지급 마일 스톤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마일스톤이 달성된 것으로 송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연의 사유와 예상 지연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해당 물품을 (혹은 일부를) 매수인의 자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인도되기 이전까지 격리된 구역에 물품을 (혹은 일부를) 저장한다.

10.3 매수인은 매도인의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청구된 모든 금액을 지급한다. 매수인은 온라인 송금, 전신 송금 혹은 수표의 방법으로 원화로 모든 대금을 지급한다. 외국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의 서면 지침을 따른다.

10.4 매수인은 체납금에 적게는 매달 **1.5%** 혹은 관련법에 따라 허용되는 가장 높은 비율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일별로 계산하고 월별로 합산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체납 금액을 징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며 이는 적절한 법정 비용을 포함한다. 본 조건하에서 혹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와 더불어 (매도인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포기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구매 주문 이행을 정지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매수인이 납부 일자에 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매도인으로부터 납부 통지서를 받고 5 일이 지나도록 연체 된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매도인은 매도인이 판단하기에 매수인의 재정 조건이 혹은 매수인의 상황이 불안정하여 필요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 증권 혹은 매도인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적절한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10.5 모든 판매는 매도인의 신용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6 매도인의 위반, 파산 혹은 여타 이유와 관련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매도인과의 클레임 혹은 분쟁을 상쇄하기 위한 이유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청구될 어떤 금액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예정이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보류하거나 혹은 상쇄하지 않는다 (혹은 상쇄하려고 하지 않는다)

10.7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i)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선행하는 서면 통지 및 위 통지에 대한 매도인의 서면 확인과 (ii) 매도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은 수정되거나 종료/취소 될 수 있으며,

예정된 수송은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여하한 수정, 종료/취소, 연기 및/또는 변경을 원인으로 매도인이 산정한 모든 요금, 부담 및/또는 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매수인의 임의 해지시 요구되는 모든 종료/취소 수수료, 제공급비용, 보관 비용, 보험료, 화물 비용, 초기 개발/생산비(nonrecurring engineering or production costs) 및 복구비용에 합리적인 이익을 더한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11. 한정 보증:

11.1 물품의 한정 보증.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항 3.4 항 및 10.2 항에 해당하는 인도로 간주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물품이 인도된 후 12 개월 동안 ("**보증 기간**") 매도인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매도인에 의해 명시된 기준, 설명서, 설계 조건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 보수 되고, 운영된다면 매도인의 제안서에 명시된 그런 상품의 설명서에 부합한다. 혹은 해당 제안서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한 설명서와 매도인에 의해 수락된 서면 동의서 그리고 판매 확인서에 포함된 설명서에 따라 주문 일자에 맞추어 제공된 물품은 재료 및 제작 기술면에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한정 보증**") 매수인은 보증 기간 내에 클레임을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한정 보증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사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송장 원본을 제공하고 매도인의 공장 혹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시설로 물품을 반송하는 화물 비용을 선불로 지급한다. 모든 클레임은 상세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고 시스템 작동 상태도 가능하다면 첨부한다. 결함이 한정 보증이 적용되는 종류와 성격의 것이면, 매도인은 매도인의 선택과 고유 권한에 따라 (a) 결함이 있는 물품의 반송을 수령하고 대체 물품을 제공한다. (b) 결함 물품의 대체 부품을 제공한다. (c) 결함 제품을 수리한다. (d) 결함 상품의 반송을 수리하고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결함 물품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매도인이 한정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클레임이라고 판단하면 매수인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통상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1.2 서비스의 한정 보증. 매도인은 모든 이행 서비스가 관련 법과 업계 표준에 따라 자격이 있는 인력에 의해 우수하게 수행 될 것을 보증한다. ("**서비스의 한정 보증**"). 이 서비스의 한정 보증은 매도인이 서비스를 완료한 후 30 일 까지 유효하다. ("**서비스 보증 기간**") 서비스 한정 보증 하에서 보증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서비스 보증 기간 안에 클레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도인에게 공지한다. 어떤 서비스 보증 하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매도인의 고유 권한 내에서) 서비스 보증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것 혹은 서비스의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크레딧을 발급하는 것에 한한다. 매도인이 한정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클레임이라고 판단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1.3 기타 제한. 조항 11.1 조와 11.2 조에 명시된 보증을 제외하고 매도인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a) 상품성의 보증, (b) 특정 목적에 적합성 보증, (c) 권리의 보증 (d) 제 삼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반한 보증으로 법에 명시되었거나 암시된 것으로 거래 과정, 이행 과정, 거래의 사용 외의 것을 포함한다. 매도인은 다음을 보증하거나 다음의 사항에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부적절한 혹은 비정상적인 사용, 오용, 남용 부적절한 설치 (매도인이 아닌 제 삼자에 의한 설치), 활용, 운용, 보존, 혹은 수리, 변경, 사고 혹은 사용, 보관, 배송 혹은 처리 상의 부주의 혹은 기타 매도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손실을 포함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이 아닌 혹은 매도인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아닌 제 삼자에 의해 수리되거나 변경된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4 독점적 의무. 본 보증은 배타적이다. 본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한정 보증은 결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매도인의 의무이다. 매도인은 계약, 불법행위, 엄격한 책임 혹은 기타에 근거하여 상품과, 서비스 혹은 부품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조항 11.1 조와 11.2 조에 명시된 조치는 매수인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조치이고 동 조항에 명시된 한정 보증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의 완전 책임이다.

11.5 매수인 위반.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서뿐만 아니라 책임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은 상기 제한 보증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12. 책임 제한:

12.1 매도인은 어떠한 이유든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 징벌적 손해배상, 상실 이익 혹은 가치 하락, 재 제조 비용 및 재 작업 비용, 설치의 철거 혹은 재설치 비용, 매수자에 의해 사전에 그런 손해가 발생 가능하다는 밝혔는지 여부를 떠나 혹은 매수자에 의해 그런 손해가 타당하게 예측 가능 한지 여부를 떠나, 클레임이 기반하는 법적 혹은 형평법상 이론에 관계 없이 (불법 행위, 계약은 기타) 그리고 어떤 포럼이든, 재화와 서비스의 제조, 포장, 인도, 저장, 사용, 오남용 혹은 미사용 혹은 그 외의 모든 이유를 포함한다.

- 12.2** 본 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혹은 관련한 매도인의 총 책임은 계약서의 위반, 불법행위 (과실을 포함)로 발생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12.3** 상기 조항 12.2 조에 명시된 책임의 제한은 (a) 매도인의 중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 그리고 (b) 매도인의 행위 혹은 누락으로 야기된 죽음 혹은 신체상의 손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13. 취소:

매수인은 판매 확인서를 발행한 이후 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단, 쌍방이 모든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이는 매수인이 명시된 계약 종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동의를 포함한다. 매수인이 서면으로 위의 조건에 동의한다면 계약 해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계약 해제 위약금	마일스톤
판매가의 25%	판매 확인서 발행 후 자재 구매 이전
판매가의 50%	자재 구매 이후 가공 이전
판매가의 75%	가공 이후 장비 완성 이전
판매가의 95%	장비 완성 이후 배송 전
판매가의 100%	배송 후

14. 종결

본 조건하에 제시된 조치와 더불어, 매도인은 다음의 상황에 매수인에게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종결 할 수 있다. (a) 매수인이 본 계약 하에서 정해 진 날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체납 통지서를 수령한 후 체납이 10 일 이상 지속 될 때, (b) 본 조건을 모두 혹은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파산을 했거나, 파산 혹은 개시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 하였거나 파산, 재산 관리 상태, 갱생, 채권자의 이득을 위한 과업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15. 변경:

매도인은 쌍방이 본 계약의 변경의 세부 사항, 결과 가격, 일정 혹은 여타 계약서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의 문서에 명시된 작업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변화 또는 변경도 이행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본 조건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관련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한 변화 또는 변경도 위와 동일하다.

16. 지적 재산권 침해:

매수인은 본인이 판매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성명서를 내거나, 보증을 할 권한이 없다.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보상을 하고 매도인을 변호한다. 미국 혹은 해당 외국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권, 혹은 기타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클레임 혹은 법적 책임, 매수인의 설명서 또는 지시 사항에 따라 물품을 준비하고 재작하는데 따라 발생한 상품 책임,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품을 허가 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매도인 외의 제 3 자가 매도인의 제품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상품과 매도인의 제품을 혼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17. 자재의 소유권:

- 17.1** (a) 매도인이 창작하고, 준비하고, 실행을 위해 축소하고 공개한 것이거나 또는 (b) 이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비밀정보 그리고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거나 이로부터 에서 추출된, 특허 가능 여부를 떠나, 모든 발상, 개념, 장치, 발명, 저작권, 개선 혹은 발견, 설계 (도안, 도면, 설명서), 추정, 가격, 노트, 전자 데이터 그리고 기타 문서 혹은 정 보는 항상 매도인의 자산이다. 제품에 대한 특허, 상표, 상호 또는 영업 비밀, 패턴, 도면 또는 디자인 또는 다른 기타 매도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지분은 매수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항상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도인에게 구매한 물품의 이용만을 위해 목적만을 위해 매수인이 필요한 상기 제시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 배타적, 양도 불능 허가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삼자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17.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및/혹은 부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직원, 대리인, 대표가 (i) 물품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한다 (ii) 물품을 분해, 역 컴파일, 혹은 반대로 역 설계 혹은 분석하지 않도록 한다. (iii) 어떤 제품 확인 혹은 소유권 안내문을 제거하지 않는다. (iv) 파생물을

변경하거나 창작하지 않는다. (v) 상품에 관한 매도인의 기술 관련 권리 및 지적 재산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혹은 (vi) 제 삼자가 위에 제시한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도록 돕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18. 수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시스템 및/또는 그 부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에 의한 시스템 및/또는 그 부품의 수출이나 재판매와 관련해,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과 수출 통제 법령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이에 따라 발포된 규정과 그 후속적인 수정 조항, 그리고 수출 면허, 수출 금지국에 대한 수출 제한 및 특정 인물 및/또는 단체에 대한 판매 제한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해, 유럽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동의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 배송 및/혹은 인도가 매도인이 수출에 필요한 모든 허가, 인가, 승인 (통칭, “허가”)의 획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해당 허가의 관할권을 가진 규제 당국 혹은 정부에 의해 해당 허가가 지연, 좌우, 거절 혹은 발행되지 않아서 물품의 배송 혹은 인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매수인은 동의한다.

19. 비밀 엄수: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밀성을 지닌 연구, 개발, 기술, 경제 또는 기타 기업의 “노하우”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여한 경우에는, 그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든 또는 그렇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항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이나 타사에게 공개할 수 없다. 만약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의 비밀 엄수 계약 (“비밀 엄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밀 엄수 계약의 조건이 본 항에 우선한다. 제 19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20. 포기 해석 금지:

매도인이 서면으로 혹은 서명을 함으로 분명하게 피력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매도인에 의해 포기로 해석되는 것을 금지한다. 매도인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어떤 권리나, 조치, 권한 혹은 특권을 행사 하지 않거나 혹은 권리 행사를 지연 하거나 혹은 매수인이 본 조건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주장하지 않는 것은 매도인이 포기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이 포기한 것으로 해석 하지 않는다.

21. 불가항력:

어떠한 경우에도 Pall 은 기상이변, 자연 재해, 화재, 사고 또는 기타 불가항력; 파업, 폐쇄 또는 기타 노동력 부족 또는 방해; 제재, 보이콧, 금수조치 또는 관세; 테러 또는 테러 행위, 전쟁 또는 전쟁 상태 또는 시민들의 소요 또는 폭동; 공공 또는 사설 통신 네트워크의 고장; 운송 업체의 지연 또는 기타 산업적, 농업적 또는 운송적 혼란; 정상적인 공급원의 고장; 전염병, 광범위한 유행병, 전염, 질병 또는 검역; 법률, 규제 또는 정부 행위; 또는 Pall 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다른 원인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Pall 의 의무 이행은 면제되고, 일시 정지되었다가 그 사건 후 적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의무의 이행이 지연 또는 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22. 제 삼자 손해자 금지:

본 계약은 오로지 쌍방과, 쌍방의 후계자 및 허가 받은 양도인의 혜택을 위한 것이며 본 조건에 따라 명시된 것이든 암시된 것이든 다른 개인이나 주체에게 어떤 법적 혹은 형평법상의 권리, 혜택 혹은 어떤 성격의 조치를 부여하도록 의도되거나 수여되지 않는다.

23. 쌍방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는 독립적인 계약자 간의 관계이다.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계약 당사자 간에 대리점, 파트너십, 합작 투자 혹은 기타 형태의 공동 사업, 고용 관계 혹은 수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어떤 일방도 계약을 위한 권한을 가지거나 어떠한 형태로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24. 유효성:

계약, 판매 확인서 혹은 본 조건의 어떤 조항이라도 관할 기관에 의해 전문이 혹은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유효성이 없거나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조항은 무효화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25. 양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제 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달리 이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인되지 않은 양도는 무효로 간주되며 판매자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26. 준거법

본 계약과 본 계약의 내용 혹은 본 계약에 의해 계획 된 거래로부터 발생한 혹은 관계된 쌍방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 법률의 충돌 원리와 관계없이 한국 법률이 적용되며 쌍방은 최종적으로 서울에 근거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통상 관할권을 따른다.

27. 효력 유지 조항:

모든 대금 지급, 비밀 업무, 보장 의무, 품질 보증, 책임 제한, 물품 반송, 자재의 소유권 조항 및 항목의 효력 유 지는 본 조건의 해석 과 집행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의 조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혹은 해당 공소시효 동안 효력이 지속될 것이다.

28. 변경 및 수정: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이 변경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 지며 양측의 위임 받은 대표가 서명한다.